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6. 장애학생 차별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